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기관은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매년 수가 인상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구두 통보로 계약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합 등급의 갱신등의 사유로 이용기간의 연장될 수 있음
계약목적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월 이용료 납부	<p><u>월 이용료 산정방법</u></p> <p>-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함</p> <p>-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함(해당자에 한함)</p> <p><u>월 이용료 납부</u></p> <p>-계약 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함,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함</p> <p>-본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이용료를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개별 청구하고,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납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함(현금영수증 요청있을 경우 발행)</p> <p>* 이용자 마다 재가서비스 이용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이용계약서상에 비용부담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호 확인하도록 함</p>

그 밖의 비용 부담액	<p>-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p> <p>-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 부담</p>
신원인수인의 권리	<p>-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p> <p>-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p> <p>-서비스제공기관이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한 신변의 이상이나 행동변화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을 권리</p> <p>-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p> <p>-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의 변경 요구할 권리</p> <p>-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p> <p>-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p> <p>-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p> <p>-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한 세부 산정 내역 요구할 수 있는 권리</p> <p>-「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p>
신원인수인의 의무	<p>-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p> <p>-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p> <p>-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p> <p>-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p> <p>-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p> <p>-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한 이행</p>
계약의 해제	<p>-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p> <p>-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p> <p>-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p> <p>-이용계약 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p> <p>-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p> <p>-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p> <p>-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합의 할 경우</p>